

고용노동부 장관,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

- 폭염중대경보 발령 대응,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

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8월 2일(일) 13시부로 폭염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했다.

- 폭염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본부·지방관서·공단·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「폭염안전 특별대책반」 상시 운영을 강화할 것
- 폭염중대경보 등 폭염상황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신속히 전파할 것
- 지역별 폭염 취약사업장에 기관장을 중심으로 ‘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’ 및 「폭염 단계별 작업중지」 조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중 지도할 것
-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토록 사업장 안내 및 지도를 강화할 것

[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]

- (체감온도 **33℃ 이상**, 폭염주의보)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
- (체감온도 **35℃ 이상**, 폭염경보)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 옥외작업 중지
- (체감온도 **38℃ 이상**, 폭염중대경보)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

특히, 물류센터,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에서의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준수 여부 및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하고, 무더위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·점검할 것을 강조했다.

또한, 기온의 상승으로 오폐수 처리시설, 하수관로, 정화조, 저장용기 등의 내부는 미생물 번식과 부패 등으로 이산화탄소 및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, 전국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외 밀폐공간 질식위험 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, 지방관서에 지도·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.

붙임 1. 여름철 폭염 「온열질환 예방수칙」

2. 질식사고 3대 안전수칙

담당 부서	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	과 장	신백우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	박현건 (044-202-8891)
	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	책임자	주무관	홍남교 (044-202-8873)
		담당자	과 장	윤현욱 (044-202-8870)
			사무관	김남균 (044-202-8871)



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



18개 외국어 번역본

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℃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.

온열질환 예방조치

- ✓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
- ✓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
- ✓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(섶터 및 그늘진 장소) 설치



체감온도 계산기

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물
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|
| 냉방장치
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폭염작업 시 (이동식)에어컨,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·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✓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|
| 휴식
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체감온도 31℃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✓ 체감온도 33℃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|
| 보냉장구
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냉각의류,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|
| 119 신고
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온열질환자·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✓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|

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체감온도 33℃ 이상
폭염주의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|
| 체감온도 35℃ 이상
폭염경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|
| 체감온도 38℃ 이상
폭염중대경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|



고용노동부

산업안전보건공단



질병관리청



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

1 산소·유해가스 측정!

산소·유해가스 농도를 알 수 없다면
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

2 충분한 환기!

작업 전,
작업 중에는 계속 환기하십시오

3 호흡보호구 착용!

적정 공기가 아닌 경우 반드시
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세요

❖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('25.12.1) 주요내용

- ①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, ② 측정결과 기록·보존(3년),
③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, ④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·교육 강조

밀폐공간 질식사고

밀폐공간은

환기가 부족하여
산소결핍,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
**사망사고 위험이
큰 장소**입니다.

기온이 상승하면 **오폐수처리,
맨홀, 축산분뇨처리 설비 등**에서
질식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.



정화조



분뇨처리장



맨홀



원료 저장탱크



침전조



반응기



식품발효·저장소



바지선 부력탱크



용접 배관내부